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가치형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A-G, Class C-G)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생략 12.~13.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현행과 같음 12. Class A-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13. Class C-G 수익증권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p>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11. 생략 12.~13. (신설)</p>	<p>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11. 현행과 같음 12. Class A-G 수익증권 13. Class C-G 수익증권</p>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1. 생략 12.~13. (신설)</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11. 현행과 같음 12. Class A-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50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20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3. Class C-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6.50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90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p>
제 40 조(판매수수료)	클래스 추가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Class A 선취판매수수료율 : 납입금액의 1% 이내 2. Class Ae 선취판매수수료율 : 납입금액의 0.5% 이내</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Class A 선취판매수수료율 : 납입금액의 1% 이내 2. Class Ae, <u>Class A-G</u> 선취판매수수료율 : 납입금액의 0.5% 이내</p>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40 플러스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A-G, Class C-G)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12.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현행과 같음 11. Class A-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12. Class C-G 수익증권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0. 생략 11.~12. (신설)	1.~10. 현행과 같음 11. Class A-G 수익증권 12. Class C-G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0. 생략 11.~12. (신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0. 현행과 같음 11. Class A-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4.5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0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2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2. Class C-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4.5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4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2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제 40 조(판매수수료)	클래스 추가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2. Class Ae <u>Class A-G</u>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25%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3. Class A, Class Ae, <u>Class A-G</u>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없음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2. Class Ae <u>Class A-G</u>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25%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3. Class A, Class Ae, <u>Class A-G</u>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없음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A-G, Class C-G)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14.~15.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A-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15. Class C-G 수익증권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생략 14.~15. (신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A-G 수익증권 15. Class C-G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3. 생략 14.~15. (신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A-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20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5. Class C-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90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제 40 조(판매수수료)	클래스 추가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3. Class A 및 Class Ae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없음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2. Class Ae 수익증권, <u>Class A-G</u> :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3. Class A, Class Ae, <u>Class A-G</u>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없음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독일 증권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클래스 추가 (Class A-G, Class C-G)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클래스 추가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14.~15.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A-G 수익증권: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15. Class C-G 수익증권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클래스 추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3. 생략 14.~15. (신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A-G 수익증권 15. Class C-G 수익증권
제 39 조(보수)	클래스 추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3. 생략 14.~15. (신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Class A-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4.20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15. Class C-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90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4
제 40 조(판매수수료)	클래스 추가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3. Class A 및 Class Ae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없음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2. Class Ae 수익증권, <u>Class A-G</u> :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 3. Class A, Class Ae, <u>Class A-G</u>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없음